

상호시장 허용,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가 전제되어야

류성룡 |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사무처장(evada2000@kosca.or.kr)

2018년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로드맵’에 따라 2021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에 허용되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는 3,261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많은 우려와 항의가 이어졌다. 종합건설업 면허 1개만 있으면 종합건설업체는 관련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종은 14개로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종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영세한 업체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실제 2020년 기준 세종·충남의 기성실적 3조 2,914억원 중 원도급 실적이 1조 768억원으로 전체 기성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계약건수 38,053건 가운데 2억원 미만 공사가 34,714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2020년도 세종충남도회 기성실적 분포

구 분	전 체	원도급	하도급
기 성 액	3조 2914억원	1조 768억원	2조 2141억원
구 성 비	100%	32.7%	67.3%

표 2 2020년도 세종충남도회 계약실적 분포

공사규모별	계약건수			계약금액		
합 계	38,053			4,875,949,600		
금 액 구 분	건수	구성비	누계구성비	금액	구성비	누계구성비
무실적	372	0.98%	0.98%	0	0%	0%
1천 미만	12,800	33.64%	34.61%	67,852,983	1.39%	1.39%
1천~5천 미만	16,611	43.65%	78.27%	354,851,982	7.28%	8.67%
5천~1억 미만	3,329	8.75%	87.02%	240,826,718	4.94%	13.61%
1억~2억 미만	1,974	5.19%	92.20%	281,523,429	5.77%	19.38%
2억~3억 미만	848	2.23%	94.43%	206,899,001	4.24%	23.63%
3억~5억 미만	756	1.99%	96.42%	292,066,610	5.99%	29.62%

이처럼 세종·충남도회의 경우 2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사업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 2억원 미만 공사와 상호시장 발주 현황에서는 2억원 이상으로 포함되어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문건설 업역이 침해당하고 있다. 물론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에 포함된 발주자공급자재금액이 1/3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발주자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발주자의 소극적인 적용과 관급자재액의 비중이 큰 상하수도, 포장 등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은 2억원 미만이나 공사에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위 조항을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일감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채산성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세종·충남도회원사와 같은 전문건설업체는 단순히 건설업체의 성격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는 주체이다. 나아가 직접시공의 핵심 주체로서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종합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호시장 허용은 단기적으로는 세종·충남도회 회원사의 매출액 급감, 도산의 피해에 머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시공주체의 부재로 건설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중앙회 외에도 각 시도회, 공제조합, 연구원 등 유기적인 결합체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각 주체의 의견을 경청하여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